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706호
- 나. 제 안 자 : 박강산 의원 (찬성자 10명)
- 다. 제 안 일 : 2025. 5. 22.
- 라. 회 부 일 : 2025. 5. 29.

2. 제안이유

-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제안 정책의 이행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실·국별 자문회의를 제도화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청년정책 제안 및 이행상황 점검까지 확대함 (안 제9조제2항)
- 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연령·직업 다양성 확보 및 활동 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9조제5항)
- 다. 청년 제안 정책의 추진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안 제10제2항)

라.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및 정책 환류 절차 규정(안 제10조 제8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6. 3. ~ 6. 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참여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며, 청년 제안 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정책 제안 및 이행 상황 점검·권고 기능 추가(안 제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 ▲위촉직 위원 구성 시 다양성 확보 및 활동 평가 제도 도입(안 제9조제5항), ▲청년 제안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화(안 제10조제2항),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및 정책 환류 절차 규정(안 제10조제8항) 등임

나. 검토 내용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심의·조정”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이행 상황을 점검·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사항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신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제안 및 자문(제5호)”과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점검과 개선 권고(제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행	개정안
<u>심의·조정한다.</u> 1. ~ 4. (생략) 5.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신설> 6. (생략)	<u>심의·조정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이행 상황을 점검·권고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5. <u>청년정책에 관한 신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제안 및 자문</u> 6. <u>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점검과 개선 권고</u> 7. (현행 6호와 같음)

- 「청년기본법」 제14조제3항¹⁾은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책 수립 단계의 심의·조정에서 정책 시행 후 점검·권고까지 확대하는 것은 청년정책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구성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 본문의 “심의·조정한다”(의무)와 “점검·권고할 수 있다”(임의)를 병렬로 연결하여 문장 구조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으며, 안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점검·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6호에서 “점검과 개선 권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의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심의·조정은 정책 수립 전 사전적 검토 기능이고, 점검·권고는

1)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책 시행 중이나 완료 후 사후적 확인 기능으로 법률상 용어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제5호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의 내용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 또는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 따라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한 점검·권고할 수 있다.”와 같이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규정하고, 기존 제5호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조 례	일 부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생 략)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한다.</u> <후단 신설> 1. ~ 4. (생 략) 5.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신 설> <신 설> 6. (생 략)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하며,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이행 상황을 점검·권고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5. <u>청년정책에 관한 신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제안 및 자문</u> 6. <u>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한 점검과 개선 권고</u> 7. (현행 6호와 같음) 7. (현행 6호와 같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u>또한, 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해 점검·권고할 수 있다.</u>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u>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u> 7. <u>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8. (현행 6호와 같음)

(2)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활동 평가 (안 제9조제5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5항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연령·직업 분야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 중 활동 내역을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활동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⑤ _____

현행	개정안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포함하고, 성별·연령·직업 분야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노력——. 위촉직 위원은 임기 중 활동 내역을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활동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 먼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2)에서 이미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의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미 의무로 규정된 내용을 노력 규정(~노력하여야 한다)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위촉직 위원에 대한 활동 보고 및 평가 제도의 경우,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활동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청년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위축되거나 해촉 사유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평가 제도 도입보다는 위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는 성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나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직급의 사람으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청년 제안 정책 환류 체계 (안 제10조제2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은 현행 조례의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추진현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기존의 임의적 점검·평가를 정기적 보고 의무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추진현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은 청년 제안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다만, 현행 조례는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단순한 현황 확인을 넘어 정책의 효과성이나 개선점을 판단하는 평가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진현황 및 결과를 보고”로만 규정하여 평가 기능이 제외 또는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점검·평가”의 문구는 유지하는 방안, 점검·평가와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안 제10조제8항 신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8항은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

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청년에게 환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⑦ (생략) <신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청년에게 환류하여야 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며, 특히 청년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높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참여 활성화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또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환류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은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그간의 청년정책 제안의 추진 경과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미래청년기획관은 2024년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누리집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청년 정책 제안을 위한 커뮤니티·게시판을 운영하였으나, 참여실적 부진과 게시판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서울시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어,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조항 신설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현재 서울시에는 청년정책 제안을 위한 다양한 창구가 운영되고 있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를 통한 정책제안, ‘청년자율예산 제도’를 통한 사업·정책·예산 제안, ‘상상대로서울’을 통한 제안, 기타 민원·청원 등을 통한 제안이 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시민제안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의 정책 제안 기회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제안 검토 과정과 결과에 대한 환류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의 방향성도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온라인 정책제안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청년 참여와 환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에서 “청년 제안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지 않아 해석상 모호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례에서 명시한 “청년 제안 정책”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실무 적용 과정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점검·권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는 조례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현행 조례 제3조(정의)에 “청년 제안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 규정 시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 제안 창구와 관련 조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년 제안 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를 실질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참여 확대와 정책 환류 체계 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겠음
-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정책 제안 및 이행상황 점검·권고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청년정책의 실질적 조정·평가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제안 정책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화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환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은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 지속가능한 정책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첫째, 안 제9조제2항의 조문 구성에서 “심의·조정”과 “점검·권고” 기능을 구분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 제9조제2항제5호는 법령 위임사항이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10조제2항에서 기존의 “점검·평가”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정기적 보고와 평가 기능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안 제9조제5항의 위원회 구성 다양성과 활동 평가 제도는 기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위원회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음

- 넷째, 안 제10조제8항의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의 경우, 기존 청년 정책 제안 게시판의 운영 경험과 현재 ‘상상대로서울’ 등 다양한 제안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에서 사용된 ‘청년 제안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현행 조례 제3조(정의)에 신설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청년 정책 참여의 실질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